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의견서

검토내역	신규검토[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재검토[ <input type="checkbox"/> ] 설계변경검토[ <input type="checkbox"/> ]
현 장 명	개봉고가 성능개선공사
대상시설물	1종시설물[ <input type="checkbox"/> ] 2종시설물[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종합의견	조건부 적정

검 토 항 목	검 토 의 견	주요 보완사항
---------	---------	---------

### ① 총괄 안전관리계획

가. 공사의 개요	적 정	
나. 안전관리조직	적 정	
다.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조건부 적정	안전모니터링장비 운용계획 보완
라.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적 정	
마.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적 정	
바.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조건부 적정	안전점검비용 재수립 보완
사. 안전교육계획	조건부 적정	안전교육 내용 작성 보완
아.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조건부 적정	비상복구장비 배치도 보완

### ②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해당공종)

가. 가설공사	조건부 적정	가설비계 안전성계산서 등 보완
나.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	해당 없음
다. 콘크리트공사(교량공사 포함)	조건부 적정	거푸집 안전성계산서 등 보완
라. 강구조물공사	-	해당 없음
마. 성토 및 절토공사	-	해당 없음
바. 해체공사	조건부 적정	해체공사 시공상세도면 등 보완
사. 포장공사	조건부 적정	포장공사 시공상세도면 보완

### □. 기타사항(국토부장관 고시)

<첨부> 안전관리계획서 보완사항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직인 생략

## 안전관리계획서 보완사항

### 1 총괄 안전관리계획

#### 다.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 1) 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 확인
  -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계획(설치위치, 설치개소, 장비 규격 등)을 도면 표기
  - 촬영자료에 대한 보관계획(자료백업 계획 및 자료보관 방법 등)
  -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손상, 유실, 작동이상 등에 대한 보수 관리계획
    - ※ 본 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1항제2호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6894호, 2016. 1. 12)에 따라 2016년 5월 19일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계획에 포함하여야 함.

#### 바.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7]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재수립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97호) 제47조(건설공사 안전점검 비용)를 참조하여 안전점검비용 보완
    - ※ 안전점검 비용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의 안전점검 비용 요율에 따라 계상되어야 하며, 당 현장의 규격으로 보간식에 따른 요율 적용 필요(산출과정 제시)

#### 사. 안전교육계획

- 1) 해당현장에 적합한 공종별 안전교육 내용 작성 보완(교량공사, 해체공사 등)
  - 당일작업의 공법이해, 시공 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포함

#### 아.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 1) 비상복구장비 및 자재는 비상사태 발생시에 긴급하게 분출하고 사용하여야 하므로 보관장소를 비상대피 도면상에 명기하여 보완

## ② 대상시설물별 세부안전관리계획(해당 공종)

### 가. 가설공사

#### 1) 가설비계 및 낙하물 방지망

- 현장의 세부 공종 별 비계, 낙하물 방지망, 낙석방지망 등의 설치·해체 순서 등을 나타낸 위치도(입면, 단면 등) 및 세부 상세도면 작성(공중 비계)
- 현재 계획된 강관비계를 시스템 비계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안전성계산서 및 시공 상세도면 작성
  -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2019. 4.)”에 따라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시스템 비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 “가설공사 표준시방코드”, “가시설물 설계기준코드”의 구조안전성 검토 절차를 참조하여 검토 실시
  - ※ 현지여건(비정형 구조물, 복잡한 구조형식 등)으로 강관비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작업 전 강관비계의 조립도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또는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함.
-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설계참여자의 서명 또는 날인된 계산서 첨부
- 비계의 과적치 하중에 대한 안전대책

#### 2) 가설울타리

- 가설울타리의 설치 및 해체 순서, 울타리 하단부의 처리, 기초 설치방법 등이 상세히 표시된 시공 상세도면 보완

#### 3) 가설장비

- 이동식 크레인 작업에 대한 위치, 반경 등을 도면에 명기하고 반경에 따른 하중 사항을 명기
- 이동식 크레인 아우트리거 위치의 지반조건에 대한 검토

### 다. 콘크리트공사(교량공사 포함)

#### 1) 각 위치별 거푸집 동바리 안전성계산서 작성 보완

-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설계참여자의 서명 또는 날인된 계산서 첨부
- 거푸집 동바리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구간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 2에 따른 관계전문가로부터 확인된 안전성계산서 첨부
- ※ 2017년 6월 1일부로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도” 폐지되었으므로 “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기준에 관한 지침” 참고하여 보완

- 2) 시스템 동바리 및 파이프 서포트 등의 설치 전체 구간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다음의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 보완(2010,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
- 종단면도, 횡단면도, 수평, 수직, 사재설치상세도 작성(비규격 가새재 구분표시)
  - 동바리의 상부 U-헤드 상세도(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설치지침 준수)
  - 하부기초 상세도(램프구간 하부 경사 구간 포함)
  - 선타설 부재에 지지하는 수평연결재 상세도
- ※ 구조 검토서의 개략도는 시공 상세도면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치화하여 해당 구조물 도면에 구체적으로 작성이 필요

바. 해체공사

- 1) 해체공사 중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대상구조물의 평·단면도 등을 첨부 필요
- 해체재의 적치 및 반출
  - 장비 및 작업 유도원의 배치 계획
  - 출입금지 지역의 선정
- 2) 해체 대상시설물의 전도 및 붕괴방지 대책 추가 필요
- 3) 해체대상 시설물의 주변여건에 따른 해체시기 수립 필요
- 4) 해체 대상 시설물의 해체시 안전성계산서 추가 필요

사. 포장공사

- 1) 포장공사의 시공방법 및 순서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의 시공 상세도면 추가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2019. 7. 1.)에 따른 안내사항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3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5항
개정내용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출 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적용시점	이 법 개정 시행(2019. 7. 1.) 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 □ 참고사항

###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7]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 지침서”(2009)
-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 (국토부 고시 2010. 6)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국토부 고시 2017. 11. 30)
- “가설공사 표준 시방서” (국토부 고시, 2018. 6. 21)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매뉴얼” (국토부 고시 2014. 12)
- “국가건설기준코드” (국가건설기준센터 고시 2018. 6. 21)

### ○ 참고

- 본 안전관리계획서는 수정·편철이 용이하도록 바인더로 관리하여 안전관리계획서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계획서에 반영하고, 안전점검은 해당 실시 시기에 실시하는 등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중 건설공사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곤란한 공종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7]의 단서조항에 따라 해당공종 착공 전에 제출이 가능하며,
-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2항 및 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내의 해당공종 착공 전에 제출하는 사유, 재승인 요청계획 등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OO 공정은 협력업체 미선정 등의 사유로 해당 공종의 세부 계획 수립(개요, 시공 상세도면,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안전성 계산서 등)이 곤란하여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승인(재심사) 요청 예정임